

제3장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제1절 총설

1. 기업결합의 개념

- 기업결합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계 아래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행동.
- 기업결합은 기업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요구.

2. 기업결합의 경제적 요인과 효과

(1) 경제적 요인

- 기업결합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의 강화, 경영의 합리화(규모의 경제), 금융의 원활화, 위험의 분산, 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험분산을 위한 업종다양화, 정부권유에 의한 부실기업의 정리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

2. 효과

- 기업결합은 일반적으로 i) 경쟁제한을 통한 독점효과와, ii)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생산성 증대효과(생산비절감, 대규모 자본에 의한 기술혁신, 기업위험의 분산)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모든 기업결합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증대효과와 독점효과의 비교에 의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규제된다.

제2절 기업결합의 유형(시장형태에 의한 분류)

1. 수평적 기업결합(horizontal integration)

- 동일한 시장에서 동종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으로 반드시 사업자 수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은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이다.
- 기업결합심사기준은 **시장집중도(시장점유율)**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그밖에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

2. 수직적 기업결합(vertical integration)

- 특정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서로 다른 단계를 영위하는 기업간의 결합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수직적 기업결합의 동인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다.
- 기업결합심사기준 은 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장봉쇄효과**를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

3. 혼합적 기업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

- 경쟁관계나 전후방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간의 결합
- 혼합결합의 분류

상품확대형	지리적으로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지만, 상품적 측면에서 다른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간의 결합. 예; 자동차회사와 오토바이회사의 결합
시장확대형	상품적 측면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운송비나 정부규제에 의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결합.
순수형	건설회사와 김치제조회사의 결합처럼 경쟁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간의 결합

- 상품확대형은 생산에 필요한 공통요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실현과 one-stop 구매편의를 통한 편의 제공.
- 상품확대형과 시장확대형은 시장진입조건과 관련하여 **잠재적 경쟁제한**의 의미가 있음.
- 순수형은 경제력집중 억제차원에서 문제가 되며, 그밖에 혼합적 기업결합은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 미국의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 :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 HHI는 당해 시장에서 각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며, 여러 개의 기업이 균점하고 있는 시장보다는 소수의 거대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높게 나타난다.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법 제7조)

현행법은 모든 기업결합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만을 금지.

1. 규제대상

- 현행법은 모든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기업결합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2. 경쟁제한성의 판단

(1) 일정한 거래분야(법 제2조 제8호)

-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거래단계, 거래상대방에 따라 관련시장을 확정한다.

(2)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8호의 2)

-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

* 유효경쟁의 판단기준으로서 구조기준설과 성과기준설이 대립

구조기준설	성과기준설
① 당해 시장에 유효한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의 사업자가 존재 ② 사업자들의 규모가 유사 ③ 사업자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경쟁적 ④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의 가능	① 시장성과가 진보적인지의 여부 ② 생산량과 가격의 관계가 원활한지의 여부 ③ 생산능력과 생산량의 관계에서 과잉투자가 있는지의 여부 ④ 이윤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은지의 여부
<장점> 기준이 엄격하고 유효경쟁의 존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다 <단점> 시장구조만으로는 경쟁의 존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장점> 경쟁의 판단이 실질적이다. <단점>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점을 쉽게 용인하게 되어 독점금지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한다.

(3) 경쟁제한성의 추정(법 제7조 제4항)

-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증의 어려움을 덜고, 규제 of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1) 시장점유율 기준(제1호)

- 결합당사자(계열회사분 합산)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i)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ii)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일 것, iii)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시장점유율합계의 25% 이상일 것 (= > 2위/1위 < 75% 미만)을 누적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 주로 수평적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HHI가 사용되고 있음(P&G, 에스케이 텔레콤 등).

*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의 추정규정에 대하여,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규정과 달리 장래의 시장성과(경쟁제한)에 대한 추정으로써, 추정요건에 해당되면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정요건과 경쟁제한적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보여줄 어떠한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는 이를 반영하여 경쟁제한의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제2호)

i)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의 기업결합으로, ii) 당해 기업결합으로 5/10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입법 취지는 대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에 침투하여 그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한 규제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규제사례는 없다.